##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18 발의연월일: 2020. 11. 19.

발 의 자: 오영훈·강선우·양정숙

전혜숙 · 이성만 · 강민정

박성준 · 김회재 · 박완주

김경만 • 주철현 • 김진애

오영환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는 인감 제작·관리에 따른 국민의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음.

그러나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증명을 다루는 각종 법률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내용 반영이 미진한 상태임.

이에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한 본인증명방법을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과 정비사업 실시계획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항 단서).

#### 법률 제 호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인감증명서를"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제14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제13조제3항 및 제16조	<u> </u>
제2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동의	
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	
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	
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	
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	
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	
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	
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	
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u>인감</u>	<u>인감</u>
<u>증명서를</u> 첨부하는 방법으로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
할 수 있다.	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
	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른 <u>듿</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